



제08-02호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최 낙 군 KIEP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ngchoi@kiep.go.kr, Tel: 3460-1079)

주요 내용

- 한·미 FT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영향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즉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내제도를 선진화 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미 FTA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혁신을 통해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 해야 함.

 - 농업부문의 한·미 FTA 대책은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제조업부문에서 한·미 FTA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 및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분야 규제 개선, 경쟁촉진제도 확립 등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서비스분야 구조조정 촉진, 미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서비스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함.
 - 무역규제, 의약품,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기타분야의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의 무역규범이 제도적으로 조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향후 관련 국내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전략을 추진해야 함.

1. 머리말

- 한국사회에서 한·미 FTA 협상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그동안 국내의 논의과정을 돌이켜 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신헌상론도 제기되었음.
-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최근까지도 한·미 FTA 협상의 효과 및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동 협상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아닌지는 구체적 협상결과를 놓고 유·불리를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함. 즉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협상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평가해 보아야 함.
- 또한 협상에 관련되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국내 관련 제도를 검토하면서 협상결과의 활용도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FTA를 능동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한·미 FTA의 협상이슈를 크게 4개 분야로 대별하였는데, 첫째, 농산물을 다룬 농업분야, 둘째, 상품일반, 섬유, 자동차를 포함하는 제조업분야, 셋째 서비스일반, 금융, 투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넷째, 원산지, 무역구제,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의약품 등을 포괄하는 기타 분야로 나누었음.

2.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 한·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농업분야의 경우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인 KREI-ASMO 2006을 이용하여 한·미 FTA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와 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을 계측하였음. 동 모형에서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른 개별 품목의 양허안(관세율, TRQ, 세이프가드 등)을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의 외생변수로 고려하였음.

- 주요 분석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한데,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 원이며,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 원으로 예상됨.
- 농업부문의 한·미 FTA 대책은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구조조정은 비효율적 분야의 축소와 효율적 분야의 유지 또는 확대를 의미하며, 한·칠레 FTA 대책에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폐업 지원사업과 전업 또는 전직 지원 등을 통한 효율성 추구를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계화·자동화·규모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가격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품목은 고품질(식품안전, 친환경, 신선도, 규격 등의 우수성) 생산체제로 유도해야 함.
- 소득보전 정책은 FTA 이행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중복 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하되, 보상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한·칠레 FTA 대책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책 대상 품목의 선정과 보상 방식 등의 보완이 요구됨.

3. 제조업부문의 수출 증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

- 제조업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 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하였음. 특히 이 상품들에 대하여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 내)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됨.
- 협상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자동차 및 섬유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의 관세양허 스케줄이 기대보다도 적극적인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한·미 FTA 체결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조업분야 대(對)세계 총 수출은 연평균 25.5억 달러, 수입은 3.7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21.8억 달러 늘어날 예상이며, 대(對)미 교역의 경우 수출은 연평균 13.9억 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증가액은 5.9억 달러에 그쳐 무역흑자가 8.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대표적인 수출증대 산업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및 섬유 분야에서 연평균 무역흑자는 각각 7.6억 달러(수출 8.4억 달러, 수입 7,200만 달러), 1.7억 달러(수출 1.9억 달러, 수입 2,300만 달러)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 한·미 FTA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자동차, 섬유 등 수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홍보 활동 등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 및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경쟁이 치열해질 산업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한·미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R&D 노력을 배가해야 함. 아울러, 시장개방에 부담을 안고 있는 일부 산업들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개방의 압력을 넘어서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4. 서비스부문의 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

-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경우 한국은 DDA 양허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나, 교육 및 의료 등 주요 서비스부문이 포괄 유보되어 한·미 FTA 추진 시 당초 개방 목표보다는 낮은 폭의 추가 개방을 달성하였음.
- 서비스분야의 주요 이슈는 래칫메커니즘(자유화 후퇴방지장치) 적용 여부, 전문직 상호 자격인정, 일시입국 및 전문직 비자 쿼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주정부 비합치조치, 특급배달 및 법률시장 개방, 방송·통신·교육·의료 서비스 개방, 스크린 쿼터, 해운, 어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었음.
- 투자분야의 주요 이슈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절차(ISD), 임시세이프가드, 투자협정의 구성 및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투자협정의 적용 범위,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와 같은 협정상 의무사항, 협정상 예외인 투자와 환경, 혜택의 부인, 비합치조치를 담은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 대위변제 등이었음.

-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의 결과 유보안의 네거티브 방식 및 래칫메커니즘의 적용으로 개방이 촉진되고, 개방의 투명성과 자유화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유보안에 기재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FTA 협정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투명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전문직 서비스 상호 인정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사·건축사·수의사 분야의 상호 자격인정 논의 개시, 방송·통신 서비스 간 접투자 허용, 전문직 사업 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영역의 단계별 개방 등이 최종 타결되었음. 특히 법률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 및 세무는 2단계 개방이 추진될 예정인데, 법률·회계 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국경간 M&A, 다양한 국제금융거래 기법, 해외 증권 발행 등 국제거래의 수요 급증에 수반되는 자문서비스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해 서비스 교역 확대, 외국투자자의 대한민국 서비스 직접투자 확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및 고용 증가 효과와 아울러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소비자후생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리나라가 국내의 우려를 반영해 간접수용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한 점이나, 애초 협상 시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보험공사의 대위변제권을 확보한 것은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분야의 규제 완화, 경쟁촉진제도의 확립 등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서비스분야 구조조정 촉진, 미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서비스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서비스 수출 지원 인프라 등이 필요함.
- 또한 투자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유치전략 수립이 중요함. 또한 ISD 등 한·미 FTA로 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는 국내투자환경 개선의 계기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외국인투자 ombudsman 제도 강화 등 투자분쟁 발생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5. 기타 분야의 국내제도 개편

- 무역구제, 의약품,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기타 분야의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의 무역규범이 제도적으로 조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국내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전략 추진이 필요함.
- 무역구제의 경우 협상결과에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의 활성화 등 반덤핑 발동 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재량적 배제에 관한 규정과 FTA 체결 이후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다루고 있음.
 -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애로사항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기업의 수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무역구제협력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각종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협력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이 협력위원회에 신속히 전달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됨.
- 의약품의 협상결과를 보면,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하였으며 정당한 구제 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익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의약품의 허가과 특허의 연계는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또한 관세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년 이내로 유예기간을 확보하였음.
 -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수입의약품 가격이 하락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R&D 투자 확대 등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앞으로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선진화와 R&D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상은 저작권, 특허, 상표, 집행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음. 미국은 자국 수준의 보호수준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전반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법제도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됨.
-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과 구체적 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반영하여 설정해야 하는 이슈로서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수적임. 제도변경에 따라 관련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한·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환경분야의 협상 결과 양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를 보장하고,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하였으며, 추가 협상에 따라 7개 국제 환경협약의 수용과 실행 및 환경조항 위반시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명시하였음.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환경법규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또한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였음.
- 미국과의 FTA 체결로 관련제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제도 개선·강화, 환경보호에 대한 국내법 집행 강화 등을 통해 환경보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및 양국간 환경협력 확대에 따라 국내 환경시장의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환경 관련 양자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관련법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개선 여지가 있는 법집행제도의 재검토,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과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도입 등이 주요 이슈였음. 노동분야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와 같은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기구를 도입하여 국내 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국내 일각에서는 노동정책의 자율성 침해,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보장 미흡, 노동시장의 지나친 유연성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되게 표출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분쟁해결절차나 공중의견제출제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가 없고, 절차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마련하도록 노

력하여,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준의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경쟁분야에서는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과 조율에 집중하였음. 한·미 FTA에서는 절차상의 규정 외에 경쟁법에서 제외된 지정독점과 공기업 관련 내용, 동의명령제도,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지정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과 동의명령제 도입은 협상단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 경쟁분과의 협상결과 중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한·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곧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무엇보다 경쟁력 확보가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동의명령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의 재설계 등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에서 양국은 중앙정부 조달 양허하한선을 인하하고 자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는 데 합의하였음. 한·미 간 FTA 합의에 따라 조달시장의 양적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호소했던 미국 내 과거 입찰 및 낙찰 실적 요구 관행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금지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이러한 시장참여기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내기업의 미국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분야의 경우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이 조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로 원산지기준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수반된다고 볼 수 있음.

- 개성공단 관련 합의사항은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통관분야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원산지검증절차가 마련되고 통관절차가 표준화·간소화됨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태의 방지 및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통관분과위에서 컨테이너안전협정 완화를 확실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한·미 FTA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업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6. 맺음말

- 이상과 같은 분야별 평가를 토대로 한·미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서 가장 큰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것임.
- 즉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은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음.
- 또한, 한·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내제도를 선진화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경제 전반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10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12단계가 급상승한 세계 11위의 국가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 및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과의 FTA는 향후 추진하게 될 일본 및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즉 한·미 FTA를 활용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촉진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FTA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스탠더드 구비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처럼 한·미 FTA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일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에 회부된 비준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 또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정부는 혁신을 통해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 확충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야 함.
- 무엇보다도 국내의 제도적 기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개방화에 따른 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보공개로 통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 사회 간 동반자 관계 및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함.
- 기업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과감한 구조조정과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 또한, 각자 분야의 시장정보와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FTA 활용전략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한편 국민 개개인은 FTA와 이에 따른 개방을 도전과 기회의 양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 무엇보다도 개방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하여, FTA를 통해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